

[사 건 명] 행심 2019 - 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1.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2017년도 2학기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체험학습에서 청구인이 지각을 하여 체험학습 모둠 조장인 피해학생과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는데, 피해학생은 2018. 10. 15. 담임교사에게 청구인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본인에 대한 허위소문(따돌림을 주도한다, 동성 친구와 사귀다)을 내서 이 소문이 교내 뿐 아니라 학원에까지 퍼져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청구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지만, 피해학생은 그 자리에서 청구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소문에 대한 정정을 원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2018.10.16.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였으며, 이에 2018. 10. 29.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함)를 개최하여 피청구인은 위 학폭위의 처분결정에 따라 2018. 10. 31.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1. 학교에서는 정확한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가해자로 확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피해학생도 청구인의 뒷담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 가해학생 처분을 하였으며, 학폭위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편향적 조사를 하여 처분하였기에 위법·부당하다.

2. 2017년 국회의사당 체험학습에서 피해학생은 같은 반 학우들이 있는 곳에서 청구인을 둘러싸고 비웃는 행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은 같은 반 학우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였으며, 또한 피해학생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청구인의 옆에 앉기 싫다고 책을 던지고 나가서, 청구인은 며칠 동안 피해학생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였다.

3. 피해학생은 청구인을 뒷담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 피해학생은 3학년인 ◇◇◇ 언니에게 청구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의 말에 의하면 평소 피해학생이 ◇◇◇ 언니에게 청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으므로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뒷담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우

므로 청구인과 피해학생 모두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4. 피해학생이 동성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본 다른 친구들도 많으며, 피해학생이 동성연애를 하는 것 같다, 아니다 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피해 추정 및 가해 추정 학생, 관련된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고, 양측 학생 및 주변 친구들은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할 때, 피해 사실을 제기한 학생에게는 피해 사실 확인을, 가해 추정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청구인이 자신을 이미 가해자로 확정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한 것일 수는 있어도 어느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학폭위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은 ‘동성 친구를 사귄다’ 는 소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학생은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학폭위에서는 심의 결과에서 3호 조치에 해당하는 판정기준이 나왔으나 청구인 혼자만 뒷담을 한 것은 아닌 점, 뒷담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교육적 고려를 감안한 논의 끝에 서면사과 1호 조치로 결정한 것이다.

4. 피해학생 측에서도 학폭위가 청구인을 중심으로 조사 및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되었으며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편파적이었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1) 먼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의 기재에 따르면 ‘2017년 체험학습(9월 14일)이후부터 2018년의 기간 중에 ◇◇◇학생이 ○○○학생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됨 (*명예훼손으로 언어폭력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라고 되어 있어 그 조치원인사실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특정되어 있는 점이 없지 않지만, 학폭위 개최 당시 전담기구 사안 보고 내용에 따르면 위 조치원인 중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의 내용 중에 일부인 ‘○○○ 학생이 같은 반 친구 ■■■■와

사귀다’ 는 말을 청구인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 특정하였고, 이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출석 및 진술, 그리고 학폭위의 심의 및 처분결과 도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청구인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과 같은 반 친구 ○○○○와 사귀다는 말을 다른 친구들에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라고 선해하여 본 건 심판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컨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보충서면, 함께 제출된 증거 포함)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과 ○○○○가 뽀뽀하였다, 사귀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말을 전한 것 이외에 추가로 ‘동성애자다’ 라는 등의 표현을 덧붙여서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적시만으로도 이는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동성끼리 사귀다, 동성애자다’ 라는 등의 표현을 두고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이를 동성애자의 결혼까지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피해학생은 위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되어 마치 피해학생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취지는 것 자체에 대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함)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자신도 피해학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험담한 사실도 있으므로 자신만 사과해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것 일뿐 이 사건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폭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별도의 청구인이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학폭위를 개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모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학폭위 위원들은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 하여 이 사건 처분 조치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폭위 개최 및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폭위 심의 결과에서 3호 조치에 해당하는 판정기준이 나왔으나 청구인에 대한 여러 사정 및 교육적 고려를 감안하여 논의 끝에 서면사과(1호)로 감경 조치하였고, 이러한 학폭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하다거나 과중하다고도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